

임대료 납부 혹은 퇴거를 위한 15 일 전 공지사항
(2020 년 3 월 1 일에서 2020 년 8 월 31 일 사이의 임대료 미납)
(민법 제 1179.03(b)(4))

수신인: _____

(임차인 귀하(귀중) 성명)

캘리포니아 주 공지

COVID-19 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하여 본 공지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을 때, 아래 신고서에 서명하여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15 일 이내 임대인에게 제출하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임대료 지급은 진행해야 합니다. 이 기간 안에 서명 및 제출을 진행하지 않으면 퇴거 보호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양식을 제출하여 보호를 받으십시오. 기록을 위해 본 서명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하십시오.

임대료 지급은 진행되어야 하며,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면 강제 퇴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. 권리 보호 및 추후 발생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지불 금액 및 미지불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 본 통지에 미응답하실 경우 불법 거주자 조치(퇴거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부지 위치: _____

총 임대료 및 미납액 _____

_____ (월/연도) \$ _____

더 많은 법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<https://lawhelpca.org/>를 방문하세요.

정보 및 리소스,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www.LandlordTenant.dre.ca.gov 를 방문하시거나, 1-833-422-4255 로 문의하세요.

면책조항: 본 공지사항에는 민사소송법 제 1179.03(C)이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민사소송법 제 1161 조 혹은 기타 해당 연방, 주 또는 지방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, 이는 임대처의 특성 및 장소, 자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추가 지침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및 법률 지원 조직, 임대인 협회, 혹은 임차인 변호 단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